

의안번호	2211863
의 퇴 인	문대림 의원
회 답 일	2025. 8. 14.
추계번호	25F4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1조의36 신설 (분산 에너지특화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등의 100%, 이후 2년간 법인세 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28.12.31.
2	안 제127조 추가 (중복지원 배제)	○ 안 제121조의 36 신설 규정을 제4항 및 제5항에 추가하여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추가
3	안 제128조 추가 (추계 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 안 제121조의 36 신설 규정을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추가하여 결정·경정 또는 의무불이행에 따라 감면 배제 대상에 추가
4	안 제132조 추가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안 제121조의 36 신설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 최저한세 제외 대상에 추가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36 신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7조 추가 (중복지원 배제)	
3	안 제128조 추가 (추계 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4	안 제132조 추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총 7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 지역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자 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한 기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2025.5.2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25.8월 현재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음
 - (지정절차)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신청^①한 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 검토^②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③을 통해 지정
 - (특구유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형의 3가지로 구분되며 특구별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상이

[표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유형 구분 및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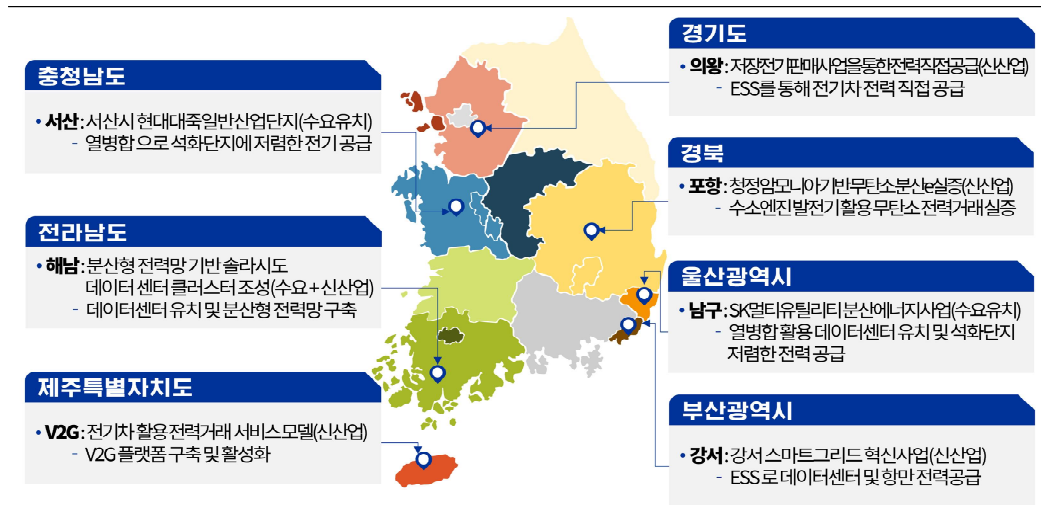
	유형 구분	주요 인센티브
수요유치형	전력의 직접거래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유치하거나 데이터 센터 등 전력 다(多) 소비시설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	분산에너지사업자 전력거래 부대비용 감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선제적 공용망 보강 검토
공급유치형	전력 수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설비를 활용 또는 추가 발전설비 유치를 통해 해당 지역 전력 자립률 제고	(수도권) LNG 용량시장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우선지원
신산업형	에너지저장장치(ESS), V2G(Vehicle-To-Grid), 태양광 등 분산자원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위해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	특구당 최대 20억 원 예산 지원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

주: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 자체 인센티브 별도 지원

자료: 산업자원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2025.5.21.보도자료

- (최종 후보지)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울산광역시(미포산단), 전라남도 해남군(솔라 시도 기업도시 일대), 충청남도 서산시(대산 산업단지) 3곳이며, 신산업형 분산특구는 경기도 의왕시(학의동), 경상북도 포항시(영일만 산단), 부산광역시(에코델타시티, 부산 신항), 제주도(제주 전역) 4곳으로, 총 7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됨

[표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 선정 지역



유형	구분	지역	주요 사업 모델	참여기업	면적 (만평)
수요 유치	1	울산광역시 (미포산단)	지역 발전사가 인근 기업에 전력을 직접 공급 및 데이터센터 유치	SK 멀티유틸리티	1,379
	2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인근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ESS 및 자체망을 통해 직접 공급	(주)보성산업	4,400
	3	충남 서산시 (대산 산업단지)	지역 발전사가 인근 산단 석유·화학 기업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	HD현대이엔에프	705
신산업 활성화	4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ESS를 활용하여 전기충전 및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 직접 공급	LS 일렉트릭, LS 사우타	286
	5	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단)	암모니아 기반 발전설비로 인근 2차 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력 공급 실증	AMOGY, GS건설, HD현대인프라코어	135
	6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부산신항)	ESS를 활용하여 전기 충전 및 인근 데이터 센터·항만에 전력 공급	부산정관에너지, (주)누리플렉스 등	1,511
	7	제주도 (제주 전역)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수익을 얻는 V2G 실증(방전기능 탑재 EV9 모델 55대 활용)	현대자동차, 헤리트	55,902

자료: 산업자원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2025.5.21.보도자료

- '25.8월 현재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한 기업의 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발생 여부 및 해당 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